



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1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전파감시(Radio Spectrum Monitoring)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

2 신속·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

- 무선국 허가·검사
- 방송국 검사
- 통신사업자 등록·신고
-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
- 전파차단장치 제조·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
-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

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·단속
- 불법감청설비 조사·단속
-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
-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
- 방송편성비용 확인
-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

4 전파 이용 촉진

-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
- 전파혼신 조사
- TV 수신환경 조사
-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
- 위성 전파환경 조사

5 국제 교류 협력

- 인접국간 전파관리 협력
- 국제 표준화 활동
-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
6 전파 교육 및 연구 지원

-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
-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

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!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.

지켜줄게!



중앙전파관리소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인터넷 전자민원 : emsit.go.kr

민원상담 : 080-700-0074
02-3400-2000



기관명	주 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	(08249)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02-2680-1700
-서울북부사무소	(11604)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	031-849-5800
-여의도지역사무소	(07235)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, 704호	02-761-284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-광주지역사무소	(61945) 광주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2층	062-651-2604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-원주지역사무소	(26384)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, 원주시청 9층	033-660-2974
-속초지역사무소	(24869)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6호	033-633-2961
대전전파관리소	(35283)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042-520-4100
-당진사무소	(31754)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도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-제주지역사무소	(63220) 제주도 청사로 59, 244호	064-728-6501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crms.go.kr

대한민국 전파·방송통신의 중심! 중앙전파관리소

CISO 지정·신고제도 안내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CISO 지정·신고제도 알아보기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(CISO)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3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)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가?

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

※ 전기통신사업자 :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(종류 : 기간통신사업자, 부가통신사업자,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)

신고 대상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)

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(실제 영리행위는 없음)하고 있거나,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CISO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신고의무 제외대상-별도 안내 참조)

※ 영리행위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영리목적의 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
신고의무 대상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?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 영리행위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영리목적의 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
CISO의 의미 및 자격 요건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란? (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

-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
- 기업 내 CISO를 임직원급으로 임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와 함께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※ 단, 겸직제한기업은 '이사'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의 자격요건

- 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④ 관련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⑥ 정보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CISO신고의무 제외 대상 및 신고 방법

신고의무 제외 대상

- ①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
- ② 소기업
- ③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, 개인정보처리자,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

겸직 제한

아래 대상의 기업은 CISO의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직 금지

- 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
-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

※ 특별자격요건

(겸직 제한 대상은 일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함)

1. 정보보호 분야업무 경력 4년 이상
2.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과 정보기술 업무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(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 필요)이상

※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신고 방법(문의 및 제출)

- 신고 및 접수관련
 - 온라인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(www.emsit.go.kr)
 - 우편 및 팩스 : 지역별 전파관리소
- 제외 대상 자료 제출 및 제도 관련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(cybercq@korea.kr)



중앙전파관리소

홈페이지 : cms.go.kr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: emsit.go.kr
전파·방송통신민원 : 080-700-0074